제263회 임시회 2007. 9. 12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•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□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9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9월 4일

□ 제안 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8조의 개정으로 조례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

□ 검토 의견

○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조 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 도록 위임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안 1부